

◎ **법무부공고 제2026-183호**

「검찰인권존증미래위원회 규정」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4월 29일

법무부장관

검찰인권존증미래위원회 규정 제정훈령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검찰에 의한 인권침해 또는 권한남용 의혹 사건에 대해 그 진상을 조사하고 법무부장관에 관련 후속조치를 권고·자문하는 기능을 수행할 검찰인권존증미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위원회의 구성(안 제3조)
- 나. 위원회의 업무, 활동기간 등(안 제4조 및 제5조)
- 다. 조사대상 사건(안 제6조 제1항)

3. 의견 제출

이 제정훈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6년 5월 11일 까지 법무부장관(참고 : 운영지원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폐 지(안)	수 정(안)	수 정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 1) 전자우편(이메일) : fodkf10@korea.kr
- 2) 주소 : (우)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법무부 운영지원과
- 3) 팩스 : (02) 2110-0307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법무부 운영지원과(전화 : (02) 2110-3061)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법무부 홈페이지(<https://www.moj.go.kr>)의 「법령/자료→법령정보→행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